# 용인 죽전 휴먼빌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당 아파트는 2007. 09. 01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 및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8302호 ( 2008. 5. 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317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2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구 분 | 아파트 코드 | 주택관리 번 호 (모델번호) |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층별구분 | 세 대 수 |
|---|---|---|---|---|---|---|---|---|---|---|---|
| 민영주택 | 21909-01 | 2008000457 (01) | 111.3077 | 84.9971 | 26.3106 | 111.3077 | 45.6891 | 156.9968 | 50.4590 | 1층~20층 | 140 |
|  | 21909-02 | 2008000457 (02) | 112.0056 | 84.9914 | 27.0142 | 112.0056 | 45.6860 | 157.6916 | 50.4556 | 1층~20층 | 120 |

(단위 : ㎡/천원, %)

| 구 분 | 주택형 | 층별구분 | 층수 | 세대수 | 분양가격: 대지비 | 건축비 | 총분양금액 | 계약금 1차(10%) 계약시 | 계약금 2차(10%) 08. 07. 10 | 중도금 1차(10%) 08. 09. 10 | 2차(10%) 08. 12. 10 | 3차(10%) 09. 03. 10 | 4차(10%) 09. 06. 10 | 5차(10%) 09. 09. 10 | 6차(10%) 09. 12. 10 | 잔금 입주시 (20%) |
|---|---|---|---|---|---|---|---|---|---|---|---|---|---|---|---|---|
| 민영주택 | 111.3077 | 1층 | 10층 ~ 20층 | 8 | 284,549 | 193,451 | 478,0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95,600 |
|  |  | 2층 |  | 8 |  | 209,451 | 494,0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98,800 |
|  |  | 3층 |  | 8 |  | 223,451 | 508,0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101,600 |
|  |  | 4층~9층 |  | 48 |  | 235,451 | 520,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104,000 |
|  |  | 10층~19층 |  | 60 |  | 245,451 | 530,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106,000 |
|  |  | 최상층 (101동) |  | 2 |  | 277,451 | 562,0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112,400 |
|  |  | 최상층 |  | 6 |  | 288,451 | 573,0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114,600 |
|  | 112.0056 | 1층 | 20층 | 6 | 284,529 | 193,471 | 478,0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47,800 | 95,600 |
|  |  | 2층 |  | 6 |  | 209,471 | 494,0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49,400 | 98,800 |
|  |  | 3층 |  | 6 |  | 223,471 | 508,0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50,800 | 101,600 |
|  |  | 4층~9층 |  | 36 |  | 235,471 | 520,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52,000 | 104,000 |
|  |  | 10층~19층 |  | 60 |  | 245,471 | 530,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53,000 | 106,000 |
|  |  | 최상층 |  | 6 |  | 288,471 | 573,0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57,300 | 114,600 |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층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층,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상기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아파트가 속한 용인시 수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봄.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1순위자 중 과거 5년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2순위는 가능), 이와 같은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주택에 공급신청할 수 없음.

〈 별도품목안내 〉

##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안내

(단위:원, VAT포함)

| 주택형별 | 확장구분 | 공급금액 | 확장내역 및 유의사항 |
|---|---|---|---|
| 111.3077 | 기본형(A) | 3,275,000 | 발코니 비확장시 기본 마감공사 비용(분양가 포함)입니다. |
|  | 부분확장형(B) | 13,765,000 |  |
|  | 계약자부담금액 [B-A] | 10,490,000 | 주방(374만원), 거실(414만원), 안방(228만원), 기타(33만원)-비확장부위 단창 설치비용 |
|  | 전체확장형(C) | 16,375,000 |  |
|  | 계약자부담금액 [C-A] | 13,100,000 | 주방(374만원), 거실(414만원), 안방(228만원), 침실1,2(294만원) |
| 112.0056 | 기본형(A) | 2,718,000 | 발코니 비확장시 기본 마감공사 비용(분양가 포함)입니다. |
|  | 부분확장형(B) | 12,058,000 |  |
|  | 계약자부담금액 [B-A] | 9,340,000 | 주방(399만원), 거실(262만원), 안방(224만원), 기타(49만원)-비확장부위 단창 설치비용 |
|  | 전체확장형(C) | 14,388,000 |  |
|  | 계약자부담금액 [C-A] | 11,670,000 | 주방(399만원), 거실(262만원), 안방(224만원), 침실1,2(282만원) |

※ 부분확장 선택 시 비확장부위 단창 등 설치됨. ※ 발코니 확장(부분확장, 전체확장) 선택시 공급금액(계약자 부담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확장내역,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 내 설치된 발코니확장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선택형 옵션품목

(단위:원, VAT포함)

| 주택형별 | 옵션구분 | 옵션내역 | 공급가액 | 세부공급내역 |
|---|---|---|---|---|
| 111.3077 | 옵션 A형 | 아트월(거실, 복도), 고급형 비데(안방) | 3,340,000 | 아트월(2,700,000) / 고급형 비데(640,000) |
|  | 옵션 B형 | 아트월(거실, 복도), 고급형 비데(안방), 폴리싱타일(주방,거실), 주방가구(주방) 안방 붙박이장(안방), 아일랜드 식탁(주방), 인덕션 렌지(주방) | 17,553,000 | 아트월(2,700,000) / 고급형 비데(640,000) / 폴리싱타일(5,700,000) / 주방가구(쌀통,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오븐레인지포함 : 3,200,000) / 안방 붙박이장(4,290,000) / 아일랜드 식탁(726,000) / 인덕션 렌지(297,000) |
| 112.0056 | 옵션 A형 | 아트월(거실, 복도), 고급형 비데(안방) | 3,340,000 | 아트월(2,700,000) / 고급형 비데(640,000) |
|  | 옵션 B형 | 아트월(거실, 복도), 고급형 비데(안방), 폴리싱타일(주방,거실), 주방가구(주방) 안방 붙박이장(안방), 아일랜드 식탁(주방), 인덕션 렌지(주방) | 16,893,000 | 아트월(2,700,000) / 고급형 비데(640,000) / 폴리싱타일(5,700,000) / 주방가구(쌀통,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오븐레인지포함 : 3,200,000) / 안방 붙박이장(3,630,000) / 아일랜드 식탁(726,000) / 인덕션 렌지(297,000) |

※ 발코니 확장(부분확장 또는 전체확장) 신청시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옵션관련 내역,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 내 설치된 옵션품목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08.5.2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에게 공급 주택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 청약예(부)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본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불가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함(인천광역시 거주자 배정 없음)

- 특별공급세대

| 구 분 | 111.3077 | 112.0056 | 계 |
|---|---|---|---|
| 세 대 | 4 | 4 | 8 |
| 경기도 | 2 | 2 | 4 |
| 서울시 | 2 | 2 | 4 |
| 인천시 | – | – | – |

※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신청일시 : 2008. 5. 27(화) 10:00 ~ 14:00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5. 27(화) 16: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 평점요소 |  | 총배점 | 배점기준 기 준 | 점수 | 비 고 |
|---|---|---|---|---|---|
| 계 |  | 100 |  |  |  |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  |  | 3자녀 | 35 |  |
|  | 영유아 | 10 |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 1명 | 5 |  |
| 세대구성(2) |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  |  | 2세대 |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무주택기간(3) |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배우자, 직계존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
|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당해시·도 거주기간(4) |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1년 미만 | 5 |  |
| 비 고 |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br>※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  |

### 2.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5. 22)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한 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함.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구분 | 순위 | 면적구분 | 신 청 자 격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청약접수 장소/시간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 민영주택 | 1순위 | 공 통 |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br>•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br>※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br>※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br>•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용인시/ 수도권 거주자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 2008. 5. 28 (수) | ■ 접수장소<br>•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br>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br>• KB 모바일 Mbank,Kbank,Bankon<br>■ 접수시간<br>• 08:30~18:00 | • 일시 : 2008. 6. 5 (목)<br>•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매일경제신문 게재<br>※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  |  | 85㎡ 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80. 8. 29 이전 국민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br>•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  |  |
|  |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불가<br>–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br>– 2002. 9. 5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br>•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  |  |  |  |
|  | 2순위 | 공 통 |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br>•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부)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2008. 5. 29 (목) |  |  |
|  |  | 85㎡ 이하 |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  |  |  |  |
|  | 3순위 | 전주택형 |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분 |  | 2008. 5. 30 (금) | ■ 접수장소 : 농협중앙회 본·지점<br>■ 접수시간 : 09:30~16:30 |  |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 점 구 분 | 점 수 | 가 점 구 분 | 점 수 |
|---|---|---|---|---|---|
| ① 무주택 기간 | 32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계 | 84 |  |  |  |  |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 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4.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됨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처분일에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5.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 신청접수 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용인시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
| 이용대상 |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br>–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
|  |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PI폰 기종만 가능) | –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홈페이지 ( www.kbstar.com )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에 접속 |
|  | KB모바일 |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br>▶ KTF, LGT : KB뱅킹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 |

##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특별공급 및 영업점 창구청약시에 한함)

| 구 분 |  | 구 비 사 항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 민영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는 농협 비치)<br>•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br>• 예금인장 (1, 2순위자 모두 포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br>•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등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br>•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  | 제3자 대리 신청 시 |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br>•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도 청약신청이 가능함.

## ■ 3순위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 전 주택형 100만원 (농협중앙회 본 · 지점 계좌 개설 후 청약신청금 예치가능)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 불 기 간 | 환 불 장 소 |  | 구 비 서 류 |
|---|---|---|---|
| 당첨자 발표 후 익영업일 이후 2008. 6. 9부터 (평일 : 09:30 ~ 16:30) 단,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청약접수한 농협중앙회 본 · 지점(청약자 본인 농협계좌에 자동이체됨) | 본인 또는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br>•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  |  | 제3자 대리 환불 시 | • 상기 서류 외<br>•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위임장 1부(환불장소에 비치)<br>•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br>•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제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농협중앙회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
|---|---|
|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br>•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 일반공급 (1, 2, 3순위) | •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br>(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 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br>[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br>•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br>•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2008년 6월 10일 ~ 6월 12일 (3일간) / 평일 10:0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당사 견본주택)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원본 제시)하거나 계약장소(당사 견본주택)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지정된 2차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순위 청약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 분양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 농 협 중 앙 회 | 020-01-043001 | 일신건영 (주) |

## ■ 계약시 구비사항

| 구 분 | 구비사항 |
|---|---|
| 공 통 |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br>• 계약금(가능한 한 용인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br>•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br>•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등)<br>–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br>–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br>–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br>–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br>– 계약자 인감도장<br>–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br>–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 07. 01 주민등록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계약조건등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입주예정일 : 2010년 4월 (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여부를 사전점검 하시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여부 확인
- 사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이전에 별도 통보 예정임.

## ■ 유의사항

- 1, 2, 3순위 및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공급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 3순위자 포함 )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증감이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입주후 불법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토록 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대리석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와 관련된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기존의 주변단지로 인한 건축사항 및 단지외 시설물의 변경 등과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사용검사 후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 단지 주변의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각 동 및 세대는 관련법등에 적법하게 인동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단지 내 다른 동에 의해 일조, 조망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경우 건축법, 주택법에 명기된 대피공간 확보 등의 관련규정을 유지,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의 벌칙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원상복구, 강제이행벌칙부과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의 배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련규정에 의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개선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배치도에서 도로의 선형,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는 향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되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면적 소수점 이하는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임함.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는 죽전 ~ 동백간 진입도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감대책으로 방음벽 및 방음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당 사업부지는 서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101동 건물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건물의 주출입구는 공공보행 통로측에 위치하며, 중앙광장측에서는 장애인 램프를 이용하여 출입하셔야 합니다.
- 당 사업부지 남측으로 현대아이파크 및 롯데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구간이 짧아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남쪽으로 어린이공원과 동쪽 도로건너편에 도서관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주출입구 경비실은 진입구 방향에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서 단지로 출입하는 데에 레벨차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차는 지하주차장에 계획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장애인용 및 소방구급용 지상주차)
- 경로당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예정이며, 그 위치는 101동과 중앙광장, 어울림마당 사이에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어린이공원과의 연결통로 및 안대지전까지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향후 입주 후에 입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를 임의로 막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홍보물,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대지초등학교, 중학교는 죽전 중학군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구 분 | 회 사 명 |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
| 건축 감리 | ㈜진명이엔씨건축사사무소 | 1,075,526,490 |
| 전기 감리 | ㈜경동기술공사 | 100,000,000 |
| 통신 감리 | ㈜성화엔지니어링 | 55,000,000 |
| 소방 감리 | 신세계엔지니어링㈜ | 66,000,000 |

##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 보 증 기 간 | 보 증 금 액 | 보 증 서 번 호 |
|---|---|---|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108,000,000,000 | 제 01212008-101-0003900 호 |

##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시행자 : 주식회사 엠지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1 시그마3 오피스텔 428호)

## ■ 시공자 : 일신건영주식회사(토목건축공사업 제1737호)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 문의전화 : 031-716-1400

-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ilshinc.co.kr)를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ARS, KB모바일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구 분 |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  | 이용기간 | 2008. 6. 5 ~ 2008. 6. 14(10일) | 2008. 6. 5 ~ 2008. 6. 14(10일) |
| KB모바일 |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br>＊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 |
|  | 이용기간 | 2008. 6. 5 ~ 2008. 6. 14(10일) |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
|  | 제공일시 | 2008. 6. 5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휴 먼 빌

**분양문의 031-716-1400**

시 행 [주]엠지빌 MGVILL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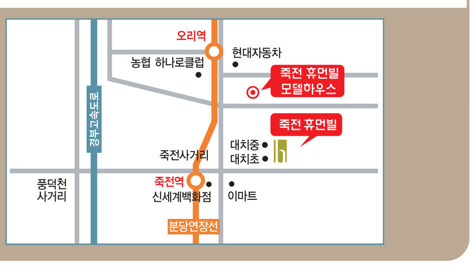시 공 일신건영 www.ilshinc.com